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5. 23 선고 2023가단5087606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영 담당변호사 정소영

피고1. 주식회사 B

2. 주식회사 C

3. 주식회사 D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종철

피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곽윤희, 노신

변론 종결2024. 4. 18.

판결 선고2024. 5. 23.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D은 109,686,491원 및 그 중 101,509,091원에 대하여는 2022. 6. 30.부터, 8,177,400원에 대하여는 2024. 3. 1.부터 각 2024. 5. 23.까지는 연 6%, 각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주식회사 C은 피고 주식회사 D과 공동하여 위 가.항 기재 109,686,491원 및 그 중 101,509,091원에 대하여는 2022. 8. 8.부터, 8,177,400원에 대하여는 2024. 3. 1.부터 각 2024. 5. 23.까지는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피고 주식회사 B과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2022. 8. 11. 체결된

신탁계약을 취소한다.

3.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서귀포 등기소 2022.

8. 17. 접수 제3603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D, 주식회사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D, 주식회사 C 사이에 생긴 부분의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주식회사 D, 주식회사 C이,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 B이 각 부담한다.

6.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신탁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 주문 제2항 및 제3항

2.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이라 한다)에 대하여 : 피고 D은 원고에게 203,177,291원 및 그 중 ① 156,109,091원에 대하여는 2022. 6. 30.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 ② 38,890,800원에 대하여는 2023. 1. 11.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 ③ 8,177,4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24. 2. 2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에 대하여 : 선택적으로, 피고 C과 피고 D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22. 8. 8.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C은 피고 D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2.항 기재 203,177,29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또는 피고 C은 피고 D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2.항 기재 203,177,291원 및 그 중 ① 194,999,891원에 대하여는 2022. 8. 8.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 ②

8,177,4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24. 2. 2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6, 7, 9, 10, 18, 20, 22 내지 26, 28, 35, 39, 4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건축 및 인테리어 설계 컨설팅업 등에 종사하는 회사이고, 피고 D은 이 사건 토지상에 생활숙박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이다.

나. 원고는 2021. 9. 7.경 피고 D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건축설계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건축설계계약'이라 한다) 및 인테리어설계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인테리어설계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는바, 원고와 피고 D은 이 사건 건축설계대금, 인테리어설계대금 및 그 지급시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하였다.

〈이 사건 건축설계대금〉

계약 후, 선금금이행증권 및 계약이행증권 제출 시	20	46,8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계획설계 제출 시	20	46,800,000원	
사업계획승인 제출 시	10	23,400,000원	
사업계획승인 득 시	20	46,800,000원	
실시설계도서(1단계) 제출 시	10	23,400,000원	
실시설계도서(2단계) 제출 시	20	46,800,000원	
합계	100	234,000,000원	

<이 사건 인테리어설계대금>

계약 후, 선금금이행증권 및 계약이행증권 제출 시	20	23,4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사업계획승인 제출 및 피고 D의 최종승인을 얻은 후	10	11,700,000원	
사업계획승인 득 시	10	11,700,000원	
실시설계도서 제출 시	40	46,800,000원	
사용검사 득 시	20	23,400,000원	
합계	100	117,000,000원	

다. 원고는 2022. 4.경 설계도서를 완성하였고, 그 설계도서는 2022. 4. 28. 건축심의를 통과하였다. 피고 D은 이를 토대로 2022. 5. 11. 건축허가신청을 하였고, 2022. 6. 29.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2021. 12. 14. 원고에게 이 사건 건축설계계약 및 인테리어설계계약(이하 통틀어 '이 사건 설계계약'이라 한다)에 따른 용역대금으로 109,090,909원(부가가치세 별도)만을 지급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 D을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설계대금채무의 이행을 최고하였으나 여의치 않자 2023. 1. 10. 원고에게 이 사건 설계계약의 해지를 통보하기에 이르렀다.

라. 한편, 피고 D은 2022. 8. 8. 피고 C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22. 8. 17. 이를 원인으로 위 토지에 관하여 피고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피고 C은 2022. 8. 11. 피고 신탁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22. 8. 17. 이를 원인으로 위 토지에 관하여 피고 신탁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2.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설계대금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 D이 이 사건 설계계약 당시 사업계획승인 완료 시¹⁾ 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건축설계대금으로 163,800,000원(= 46,800,000원 + 46,800,000원 + 23,400,000원 + 46,800,000원), 이 사건 인테리어설계대금으로 46,800,000원(= 23,400,000원 + 11,700,000원

+ 11,700,000원) 등 이 사건 설계대금 합계 210,6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가 제공한 설계도서를 토대로 피고 D이 2022. 6. 29.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피고 D은 원고에게 이 사건 설계대금 210,600,000원 중 기 지급받은 109,090,909원을 제외한 나머지 101,509,091원(이하 '이 사건 설계잔금'이라 한다)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D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행지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D은 원고로부터 설계용역을 적시에 제공받지 못하여 건축허가가 지체되었고, 그로 인하여 건축자금을 조달하지 못함에 따라 이 사건 사업이 중단되었으므로, 피고 D이 입은 손해를 고려할 때 원고의 이 부분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9, 10, 39, 4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원고와 피고 D은 이 사건 설계계약 당시 대가기간을 2021. 7.부터 2022. 3.까지 9개월로 정하였을 뿐(이 사건 설계계약서 제2조), 전체 용역의 이행기나 단계별 용역의 이행기를 명시적으로 정한 바 없는 점, ② 원고와 피고 D은 이 사건 건축설계계약 당시 피고 D이 대금의 지급을 지체함으로써 설계업무가 지체되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원고가 면책된다고 약정하였는바(이 사건 건축설계계약서 제16조 제1항), 피고 D은 이 사건 설계계약 체결일로부터 약 3개월 정도 지난 2021. 12. 14.에야 비로소 원고에게 일부 대금을 지급하였고, 피고 D은 그로부터 약 6개월 정도 지난 2022. 6. 29. 원고로부터 제공받은 설계도면을 토대로 건축허가를 받았으므로, 앞서 본 대가기간이 9개월임을 고려할 때, 위 건축허가를 받기까지 원고의 설계용역 제공이 지체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③ 원고의 사내이사 E은 피고 D의 임직원들과 단체대화방을 개설하여 이 사건 설계용역의 진행상황을 공유하였는바, 그 과정에 피고 D이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설계계약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거나 일정지연을 이유로 항의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가 이 사건 설계계약에 따른 용역의 제공을 지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D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불완전이행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D은 원고의 건축설계도면에 건축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고, 건축자재가 특정되어 있지 않으며, 이를 토대로 물량을 계산하거나 견적을 산출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의 수준이고,

인테리어설계도면 또한 제대로 작성된 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D이 이 사건 설계계약 당시 건축허가를 받을 때까지 이 사건 설계대금 합계 210,600,000원을 수수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 D이 2022. 6. 29. 건축허가를 받음으로써 그 대금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이상 피고 D은 이 사건 설계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원고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는 그 책임의 존부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따라서 피고 D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건축사 자격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D은 원고의 사내이사 E에게 건축사 자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이 사건 설계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실은 위 E에게 그러한 자격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설계계약은 원시적으로 불능인 급부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무효라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1, 2, 29 내지 31, 40 내지 42호증, 을 5,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사내이사 E은 2011년 미국 F대학교에서 인류학 학사학위를 취득하였고, 2016년 미국 G대학교에서 건축학 석사학위를 취득하였는바, 피고 D은 사전에 E의 위와 같은 이력을 알고 원고에게 건축허가에 필요한 대관업무(代官業務) 등을 수행할 건축사를 직접 소개하기까지 한 점, ② 원고는 설계업무를 직접 수행하였고, 그 과정에 건축사로부터 건축허가에 필요한 도움을 받는 등 건축사와 협업을 통하여 결과적으로 피고 D로 하여금 건축허가를 받도록 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 D은 위 E의 이력을 고려하여 대관업무에 필요한 건축사의 도움을 받도록 조치하는 등 원고와 건축사의 협업을 통한 건축허가를 당초부터 예정하고 있었다 할 것인데, 피고 D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건축사의 협업을 거쳐 완성된 설계도면을 토대로 건축허가를 받았으므로, 이 사건 설계계약이 원시적으로 불능인 급부를 목적으로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 D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자료수집비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건축설계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 자료수집비용 등으로 8,177,400원이 소요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 D을 상대로 동액 상당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갑 9, 3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 D은 이 사건

건축설계계약 당시 원고가 이 사건 건축설계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료, 즉 설계진행 및 건축허가에 필요한 제반서류, 토지이용에 관한 증빙서류, 대지측량도(현황 및 경계측량도), 지질조사서 및 지내력 검사서, 교통영향평가서 등 각종평가서 및 검토서 등을 제공하는 데 협조하여야 하고, 만일 그 수집을 원고에게 위탁한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불하기로 약정한 사실, ② 원고는 2022. 2. 14.경 주식회사 H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현황측량대금으로 880,000원, 2022. 3. 3.경 주식회사 I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지반조사대금으로 3,300,000원, 주식회사 J에게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대금으로 2022. 3. 29.경 1,650,000원 및 2022. 6. 27.경 1,650,000원, 2022. 5. 17.경 사단법인 K에게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수수료로 697,400원을 각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D은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건축설계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지출한 자료수집비 합계 8,177,400원(= 880,000원 + 3,300,000원 + 1,650,000원 + 1,650,000원 + 697,400원, 이하 '이 사건 자료수집비'라 한다)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브랜딩대금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 D과 사이에 이 사건 설계계약 외에 브랜딩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대금을 54,600,000원으로 정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대금 상당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갑 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21. 6. 17.경 작성하여 피고 D에게 보낸 견적서에 이 사건 건축설계대금으로 234,000,000원, 이 사건 인테리어설계대금으로 117,000,000원이 각 책정된 외에 브랜딩대금으로 54,600,000원이 책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를 비롯하여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견적서에는 브랜딩대금 외에도 디자인감리대금으로 46,800,000원, 사업컨설팅대금으로 54,600,000원이 각 책정되어 있는바, 원고가 피고 D을 상대로 디자인감리계약이나 사업컨설팅계약의 성립을 주장하며 그 대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위 견적서에 대금이 책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그에 대한 합의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② 원고와 피고 D은 위 견적서에 책정된 대금에 따라 이 사건 건축설계 및 인테리어설계에 대한 이 사건 설계계약서를 작성한 반면, 브랜딩, 디자인감리, 사업컨설팅에 대한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는바, 그로부터 원고가 앞서 본 견적서 중 필요한 부분에 한하여 선별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추단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갑 11, 17,

19, 21, 36호증의 각 기재를 비롯하여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브랜딩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 D이 이 사건 설계계약에서 정한 대금의 지급을 지체함에 따라 앞서 본 바와 같이 2023.

1. 10. 이 사건 설계계약을 해지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설계계약이 이행되었다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는데, 그 손해액은 이 사건 건축설계계약의 중도해지로 인하여 지급받지 못한 대금 70,200,000원(= 23,400,000원 + 46,800,000원) 및 이 사건 인테리어설계계약의 중도해지로 인하여 지급받지 못한 대금 70,200,000원(= 46,800,000원 + 23,400,000원) 등 대금 합계 140,400,000원에서 이 사건 설계계약의 중도해지로 인하여 원고가 그 지출을 면한 경비 101,509,200원(= 140,400,000원 × 72.3%2))을 제외한 나머지 38,890,800원 상당이라고 주장하며 동액 상당의 배상을 구한다.

그러나 국세청이 고시한 단순경비율은 소득세법상 과세표준인 소득금액을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그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는 데 적용되는 것이므로(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45조 제3항), 이 사건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설계계약의 중도해지로 인하여 지급을 면한 경비를 산출하는 데 이를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고, 달리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설계계약의 중도해지로 인하여 38,890,800원 상당의 이익을 상실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 D은 원고에게 이 사건 설계잔금 101,509,091원, 이 사건 자료수집비 8,177,400원 등 합계 109,686,491원 및 그 중 이 사건 설계잔금 101,509,091원에 대하여는 건축허가일 다음날인 2022. 6. 30.부터, 이 사건 자료수집비 8,177,4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24. 2. 2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분 송달 다음날인 2024. 3. 1.부터 각 피고 D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24. 5. 2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각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자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D이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22. 8. 8. 피고 C과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2. 8. 17. 이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를 해하였고, 피고 C 또한 그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 이에 가담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 C을 상대로 사해행위인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와 함께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채권액 상당의 가액배상을 구하거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으로서 동액 상당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제3자에 의한 채권의 침해가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는 있으나, 제3자의 채권침해가 언제나 불법행위로 되는 것은 아니고 채권침해의 태양에 따라 그 성립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정하여야 하는바, 제3자가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채권자로 하여금 채권의 실행과 만족을 불가능 내지 곤란하게 한 경우 채권의 침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제3자의 행위가 채권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채무자 재산의 감소행위에 관여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존재 및 그 채권의 침해사실을 알면서 채무자와 적극 공모하였다거나 채권행사를 방해할 의도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였다는 등 채권침해의 고의·과실 및 위법성이 인정되는 경우라야만 할 것이며, 여기서 채권침해의 위법성은 침해되는 채권의 내용, 침해행위의 태양, 침해자의 고의 내지 해의의 유무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하되, 거래의 자유 보장의 필요성, 경제·사회정책적 요인을 포함한 공공의 이익, 당사자 사이의 이익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다2502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든 증거 및 갑 3, 5,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D이 2022. 6. 29. 건축허가를 받음에 따라 이 사건 설계계약에서 정한 일부 대금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였고, 원고는 2022. 7. 20.경부터 수차례에

걸쳐 피고 D를 상대로 그 대금채무의 이행을 최고한 점, ② 피고 D의 대표이사인 L와 그의 남편인 M은 2022. 8. 8. M을 사내이사로, L를 감사로 하고, 부동산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 C를 설립한 점, ③ 피고 C는 설립 당일인 2022. 8. 8. 피고 D와 사이에 피고 D 소유의 유일한 재산으로서 시가 650,000,000원 이상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2. 8. 17. 이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 D와 피고 C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 D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킴으로써 앞서 본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채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피고 C 또한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그와 같은 채권의 존재 및 그 침해사실을 알면서 피고 D와 적극 공모하거나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채권행사를 방해할 의도로 피고 D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피고 D에 대한 채권의 실현이 곤란해지는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 C은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C은 피고 D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으로서 이 사건 설계잔금 101,509,091원, 이 사건 자료수집비 8,177,400원 등 합계 109,686,491원 및 그 중 이 사건 설계잔금 101,509,091원에 대하여는 불법행위일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일인 2022. 8. 8.부터, 이 사건 자료수집비 8,177,400원에 대하여는 위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2024. 2. 2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분 송달 다음날인 2024. 3. 1.부터 각 피고 C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24. 5.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의 피고 C에 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일부 인용하므로, 이와 선택적으로 병합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에 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4. 피고 신탁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채무자인 피고 C이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22. 8. 11. 피고 신탁회사

사이에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22. 8. 17. 이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신탁회사 앞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였으므로 이 사건 신탁계약은 사해신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 신탁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신탁계약의 취소와 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채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와 사이에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그 신탁계약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서 한 사해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9. 9. 7. 선고 98다4149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신탁계약 당시 원고가 피고 C에 대하여 갖고 있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당시 피고 C은 위 손해배상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채 그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신탁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신탁회사 앞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므로, 그 신탁계약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고서 한 사해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신탁회사와 피고 C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신탁계약은 사해신탁으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신탁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신탁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D, C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한다.

판사하성원

별지

1)건축법 제11조 제1항은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주택법

제15조 제1항 및 주택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은 30호 이상의 단독주택 또는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등의 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주택법 제19조 제1항 제1호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때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건물은 주택법령상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물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원고와 피고 D은 이 사건 설계계약서에 "사업계획승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그 용어가 건축허가를 의미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국세청이 고시한 서비스/건축설계의 단순경비율